

#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결과 보고서

- 연구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정책위원회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우주형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동호  
대전일보 기자 윤평호  
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무국장 서미정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래혁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희정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정병규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정은희
- 주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선영, 팀장 홍은주, 간사 성선화
- 도움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 성열서

#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결과 목차

|  |    |
|--|----|
| <b>I. 연구목적 및 방법</b>                    |    |
| 1. 연구목적 .....                          | 1  |
| 2. 연구방법 .....                          | 1  |
| <br>                                   |    |
| <b>II. 분석결과</b>                        |    |
| 1.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                   | 5  |
| 2. 인구감수성과 하위요인의 분석 .....               | 8  |
| 3. 참여자 특성별 인권감수성 차이 검증 .....           | 9  |
|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제 판단 상관관계 .....       | 11 |
| <br>                                   |    |
| <b>III. 결론</b>                         |    |
| 1. 결과 요약 .....                         | 12 |
| 2. 제언 .....                            | 13 |
| <br>                                   |    |
| <b>IV. 첨부</b>                          |    |
| 1.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지 .....           | 15 |
| 2. 에피소드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제 판단 상관관계 ..... | 24 |
| 3. 참고문헌 .....                          | 29 |

# I. 연구목적 및 방법

## 1. 연구목적

천안시는 2013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 추진되지 않았다. 본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활동을 전개한 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에게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천안’을 위한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7개는 찬성, 3개는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유보한 정책 제안에 인권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천안의 복지와 인권에 좀 더 집중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검토하고, 비판을 넘어 실현가능한 보편적 복지정책 연구 및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올 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정책위원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천안시민이 인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인권감수성 조사가 선택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천안시민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천안시민이거나 근무지나 학교 등 생활반경이 주로 천안인 자를 포함하여 천안시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20세 이상 528,300명의 0.1%를 목표로 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임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설문지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감수성을 진단하는 측정도구로 개발한 지표를 기본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선행연구를 비교해가며 구성하였다. 이후 정책위원회에서 3차례

내용을 검토하였고, 2021년 5월 31일(월)부터 6월 10일(목)까지 총 35부의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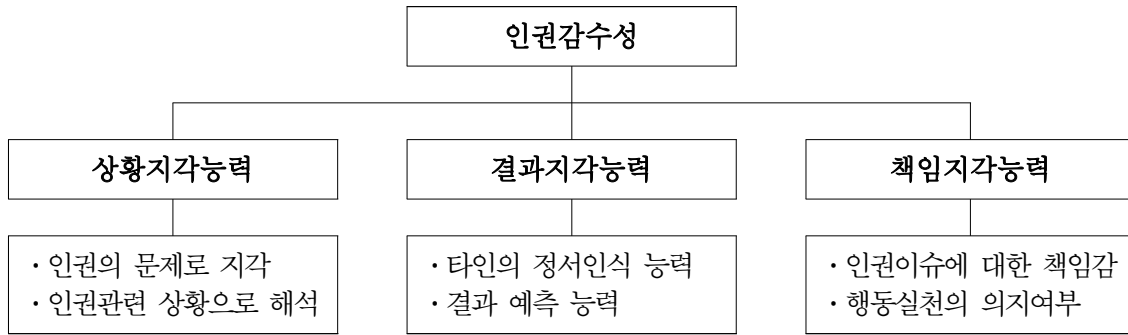
조사는 2021년 6월 21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5주간 진행되었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표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연장하였다. 이후 총 665부의 설문이 수거되었으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연령과 성별에 집중되어 있던 설문과 기한 내 수거되지 못한 80부와 일부 응답이 누락된 설문 11부를 제외한 574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인권감수성의 개념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는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즉,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지켜주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철학적이고 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면 피교육자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본 연구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감수성을 진단하는 측정도구로 개발한 지표를 기본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비교해가며 진행하였다.

인권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각하며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이다. 즉 인권감수성이란 인권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모형을 실천에 맞게 설명하자면, 인권문제를 접한 상황에서 상황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 모두 갖춰야 한다. 어느 한 가지 요인이 결여될 경우에는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요인별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김미정, 2017).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

〈그림 1-1〉 인권감수성 모형

### 3) 측정도구

#### (1) 개인적 특성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인 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장애여부,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보았고, 인권인식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수강여부,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정도, 최근 5년 이내 경험, 천안시 인권증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인권감수성 점수 그리고 인권관련 행사에 대한 관심에 대해 질문하였다.

#### (2)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확인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2002)에서 개발된 ‘인권감수성 지 표’ 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 황을 나타내는 각각의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그렇지 않은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중요도를 평정하는 것이다.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의 점수가 비인권가치의 문항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미정, 2017).

각 에피소드별 검사문항에서 I 번에 해당하는 질문은 상황지각, II 번에 대한 질 문은 결과지각, III 번 질문은 책임지각에 대해 측정한다. 1개의 에피소드 당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10개의 에피소드 중 사회복지실천과 관련 있는 가 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등 5개의 에피소드를 선정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 행하였다(김충희, 2004; 박정선, 2007; 서지숙, 2016; 장바론, 2017; 김미정, 2017).

<표 1-1> 설문조사 내용

| 구분               | 내용  |
|------------------|---|
| 개인적 특성<br>(12문항) |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장애여부, 주관적인 경제수준, 인권교육 수강여부,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정도, 최근 5년 이내 경험, 천안시 인권증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인 인권감수성 점수, 인권관련 행사 참석여부 |
| 인권감수성<br>(30문항)  |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김씨의 구속(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감원대상(평등권), 국가의료정보센터설립(사생활권), 의사의 고민(장애인 신체의 자유권)                                 |

#### 4) 분석방법

본 조사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기술 통계분석, 참여자의 인권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 참여자 개인적 특성과 인권감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분석결과

### 1.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표 II-1-3>은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요약한 것이다. 일단,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87명으로 같게 나타났다. 연령대의 평균은 45.7세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80점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서북구 동지역과 동남구 동지역이 각각 47.4%, 27.5%로 주로 분포하였다. 참여자 중에 10.2%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약 70%가 등록된 장애인이다. 개인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3.22점의 평균이 나타났다.

<표 II-1>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I

| 변수           | 구분            | 빈도     | %     | 변수            | 구분                 | 빈도            | %     |       |
|--------------|---------------|--------|-------|---------------|--------------------|---------------|-------|-------|
| 성별           | 남자            | 287    | 50.0  | 주민등록상<br>거주지  | 동남구 읍면             | 50            | 8.7   |       |
|              | 여자            | 287    | 50.0  |               | 동남구 동              | 158           | 27.5  |       |
|              | 합계            | 574    | 100.0 |               | 서북구 읍면             | 44            | 7.7   |       |
| 연령           | 20대           | 107    | 18.6  |               | 서북구 동              | 272           | 47.4  |       |
|              | 30대           | 118    | 20.6  |               | 기타                 | 50            | 8.7   |       |
|              | 40대           | 127    | 22.1  |               | 합계                 | 574           | 100.0 |       |
|              | 50대           | 112    | 19.5  |               | 장애여부               | 장애인등록유        | 41    | 7.1   |
|              | 60대           | 74     | 12.9  |               |                    | 장애인등록없        | 18    | 3.1   |
|              | 70대 이상        | 36     | 6.3   |               |                    | 장애인<br>아니다    | 515   | 89.7  |
|              | 합계            | 574    | 100.0 |               |                    | 합계            | 574   | 100.0 |
|              |               | 평균표준편차 | 45.7세 | 14.968        | 개인의<br>인권감수성<br>수준 | 1점<br>(매우 낮다) | 18    | 3.1   |
| 주관적인<br>경제수준 | 1점<br>(매우 낮다) | 39     | 6.8   | 2점            |                    | 76            | 13.2  |       |
|              | 2점            | 125    | 21.8  | 2.5점          |                    | 1             | .2    |       |
|              | 2.5점          | 9      | 1.6   | 3점<br>(보통이다)  |                    | 279           | 48.6  |       |
|              | 2.8점          | 1      | 0.2   | 3.5점          |                    | 1             | 0.2   |       |
|              | 3점<br>(보통이다)  | 318    | 55.5  | 4점            |                    | 158           | 27.5  |       |
|              | 3.5점          | 2      | 0.3   | 5점<br>(매우 높다) |                    | 41            | 7.1   |       |
|              | 4점            | 64     | 11.2  | 합계            |                    | 574           | 100.0 |       |
|              | 5점<br>(매우 높다) | 15     | 2.6   | 평균표준편차        |                    | 3.22점         | 0.878 |       |
|              | 합계            | 573    | 100.0 |               |                    |               |       |       |
|              | 무응답           | 1      | 0.2   |               |                    |               |       |       |
|              | 평균표준편차        | 2.80점  | 0.821 |               |                    |               |       |       |

참여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수강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자가 53.1%, 비경험자가 46.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서는 75.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5년 이내의 경험에 대해 중복선택 가능으로 물어본 결과에서는 기부가 34.7%, 자원봉사가 29.2%, 헌혈이 11.8%, 육아가 9.7%, 출산이 3.8% 순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인권증진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선 평균 점수 2.61점으로 ‘낮은 편이다(2점) ~ 보통이다(3점)’ 사이에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향후 인권토론회 또는 인권포럼에 참여할 의향에는 5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II

| 변수                              | 구분    | 빈도    | %     | 변수                               | 구분                | 빈도    | %     |       |
|---------------------------------|-------|-------|-------|----------------------------------|-------------------|-------|-------|-------|
| 인권 관련 교육 수강 경험                  | 있다    | 305   | 53.1  | 천안시 인권보호 & 증진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1점 (매우 낮다)        | 51    | 8.9   |       |
|                                 | 없다    | 269   | 46.9  |                                  | 2점                | 183   | 31.9  |       |
|                                 | 합계    | 574   | 100.0 |                                  | 3점 (보통이다)         | 282   | 49.1  |       |
|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는지 여부 | 알고 있다 | 141   | 24.6  |                                  | 4점                | 52    | 9.1   |       |
|                                 | 모른다   | 433   | 75.4  |                                  | 5점 (매우 높다)        | 6     | 1.0   |       |
|                                 | 합계    | 574   | 100.0 |                                  | 합계                | 574   | 100.0 |       |
| 최근 5년 이내의 경험 (다중응답)             | 자원봉사  | 292   | 29.2  |                                  | 평균/표준편차           | 2.61점 | 0.812 |       |
|                                 | 헌혈    | 118   | 11.8  |                                  | 향후 인권포럼 등에 참여할 의향 | 예     | 317   | 55.2  |
|                                 | 기부    | 347   | 34.7  |                                  |                   | 아니오   | 257   | 44.8  |
|                                 | 출산    | 38    | 3.8   |                                  |                   | 합계    | 574   | 100.0 |
|                                 | 육아    | 97    | 9.7   |                                  |                   |       |       |       |
|                                 | 경험無   | 109   | 10.9  |                                  |                   |       |       |       |
|                                 | 합계    | 1,001 | 100.0 |                                  |                   |       |       |       |



주관적 경제수준



개인의 인권감수성 수준





천안시의 인권보호& 증진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그림 II-1>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그래프

참여자의 직업 분포를 내림차순으로 알아본 결과, 직장인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부가 12.4%로 2순위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8.8%, 복지관련 종사자가 7.5%, 무직이 6.7%, 학생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의 직업 분포의 결과보다 복지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참여자의 직업 분포

| 구분      | 빈도  | %    | 구분        | 빈도  | %     |
|---------|-----|------|-----------|-----|-------|
| 직장인     | 193 | 33.8 | 노인일자리 근로자 | 10  | 1.8   |
| 주부      | 71  | 12.4 | 활동가       | 9   | 1.6   |
| 자영업     | 50  | 8.8  | 사업가       | 8   | 1.4   |
| 사회복지 관련 | 43  | 7.5  | 군인        | 5   | 0.9   |
| 무직      | 38  | 6.7  | 농업        | 4   | 0.7   |
| 학생      | 30  | 5.3  | 전문직       | 4   | 0.7   |
| 공무원     | 26  | 4.6  | 아르바이트     | 3   | 0.5   |
| 프리랜서    | 20  | 3.5  | 기타        | 28  | 4.9   |
| 의료분야    | 19  | 3.3  | 합계        | 571 | 100.0 |
| 교직원     | 10  | 1.8  | 무응답       | 3   | 0.5   |

## 2. 인권감수성과 하위요인의 분석

인권감수성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표Ⅱ-4 하단), 상황지각 2.41점, 결과지각 2.32점, 책임지각 2.51점으로 책임지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감수성에 대한 총 평균은 2.41점이다. 천안시민의 경우, 인권 관련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된 상황으로 지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황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감수성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각 에피소드 별 점수를 보면(표Ⅱ-4), 김씨의 구속(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이 가장 높은 3.03점을 나타냈고, 국가의료정보센터 건립(사생활권)은 1.6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다.

인권감수성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어진 상황을 인권 관련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지각의 평균이 가장 높은 에피소드는 김씨의 구속(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2.94점이고, 가장 낮은 에피소드는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2.03점이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하는 결과지각이 가장 높은 에피소드는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3.05점이고, 가장 낮은 에피소드는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1.67점이다.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인 책임지각이 가장 높은 에피소드는 상황지각과 같은 김씨의 구속(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3.43점이고, 가장 낮은 에피소드는 상황지각과 결과지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1.24점이다.

〈표Ⅱ-4〉 인권감수성 척도의 세부문항분석 결과

| 에피소드        | 인권항목           | 인권감수성 |       | 상황지각능력 |       | 결과지각능력 |       | 책임지각능력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가족회의        | 노인의 행복추구권      | 2.90  | 1.778 | 2.47   | 2.244 | 3.05   | 2.197 | 3.18   | 2.015 |
| 김씨의 구속      |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 3.03  | 1.785 | 2.94   | 2.139 | 2.72   | 2.265 | 3.43   | 1.925 |
| 감원대상        | 평등권            | 2.30  | 1.827 | 2.29   | 2.337 | 2.39   | 2.275 | 2.23   | 2.225 |
|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 | 사생활권           | 1.65  | 1.871 | 2.03   | 2.297 | 1.67   | 2.220 | 1.24   | 1.966 |
| 의사의 고민      |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    | 2.20  | 2.033 | 2.32   | 2.323 | 1.79   | 2.228 | 2.48   | 2.303 |
| 전체          |                | 2.41  | 1.297 | 2.41   | 1.447 | 2.32   | 1.454 | 2.51   | 1.326 |

### 3. 참여자 특성별 인권감수성 차이 검증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척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I-5) 성별과 연령, 거주지, 인권관련 수강여부, 직업, 최근 5년간에 기부·봉사·헌혈 경험에 따라서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2.34점)보다 남성(2.49점)이 인권감수성의 평균이 높고, 노년층이 그 이하의 연령대보다 인권감수성이 낮으며, 읍과 면 거주자(2.10점)보다 동에 거주한 참여자(2.45점)의 인권감수성이 높다. 또한 인권관련 수강을 받은 참여자(2.64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2.16점)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검정통계량 t값이 20.955점으로 측정된 개인적 특성 중에 가장 평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업의 분포에서는 주부 집단(1.98점)의 인권감수성이 가장 낮았고, 최근 5년간의 경험에서는 기부(2.65점), 봉사(2.62점), 헌혈(2.68점)의 경험자가 모두 미경험자보다 인권감수성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검증

| 변인                   | Group            | n      | 인권감수성<br>평균 | 표준편차  | t/F    | 유의확률    | 사후검증    |     |
|----------------------|------------------|--------|-------------|-------|--------|---------|---------|-----|
| 성별                   | 남성(a)            | 287    | 2.49        | 1.349 | 1.748  | .187    | a<b     |     |
|                      | 여성(b)            | 287    | 2.34        | 1.242 |        |         |         |     |
| 연령                   | 청년(a)            | 225    | 2.42        | 1.183 | 19.455 | .000*** | c<a,b   |     |
|                      | 중년(b)            | 239    | 2.70        | 1.320 |        |         |         |     |
|                      | 노년(c)            | 110    | 1.79        | 1.266 |        |         |         |     |
| 주관적<br>경제수준          | 1점(a)            | 39     | 2.31        | 1.277 | .256   | .906    |         |     |
|                      | 2점(b)            | 125    | 2.43        | 1.309 |        |         |         |     |
|                      | 3점(c)            | 318    | 2.38        | 1.296 |        |         |         |     |
|                      | 4점(d)            | 64     | 2.50        | 1.266 |        |         |         |     |
|                      | 5점(e)            | 15     | 2.20        | 1.614 |        |         |         |     |
| 거주지                  | 읍, 면(a)          | 94     | 2.10        | 1.405 | 5.762  | .017*   | a<b     |     |
|                      | 동(b)             | 430    | 2.45        | 1.262 |        |         |         |     |
| 장애여부                 | 장애(a)            | 59     | 2.44        | 1.425 | .024   | .878    |         |     |
|                      | 비장애(b)           | 515    | 2.41        | 1.283 |        |         |         |     |
| 인권관련<br>수강 여부        | 경험(a)            | 305    | 2.64        | 1.356 | 20.955 | .000*** | b<a     |     |
|                      | 미경험(b)           | 269    | 2.16        | 1.177 |        |         |         |     |
| 주요<br>직업분포           | 직장인(a)           | 193    | 2.56        | 1.318 | 2.837  | .024*   |         |     |
|                      | 주부(b)            | 71     | 1.98        | 1.260 |        |         |         |     |
|                      | 자영업(c)           | 50     | 2.51        | 1.277 |        |         |         |     |
|                      | 학생(d)            | 30     | 2.27        | 1.113 |        |         |         |     |
|                      | 인권교육<br>의무대상자(e) | 79     | 2.51        | 1.383 |        |         |         |     |
| 최근<br>5년<br>동안<br>경험 | 기부               | 경험(a)  | 347         | 2.65  | 1.313  | 5.508   | .000*** | b<a |
|                      |                  | 미경험(b) | 227         | 2.06  | 1.193  |         |         |     |
|                      | 봉사               | 경험(a)  | 292         | 2.62  | 1.343  | 3.991   | .000*** | b<a |
|                      |                  | 미경험(b) | 282         | 2.20  | 1.213  |         |         |     |
|                      | 헌혈               | 경험(a)  | 118         | 2.68  | 1.274  | 2.520   | .012*   | b<a |
|                      |                  | 미경험(b) | 456         | 2.35  | 1.296  |         |         |     |
|                      | 출산               | 경험(a)  | 38          | 2.24  | 1.078  | 0.849   | .396    |     |
|                      |                  | 미경험(b) | 536         | 2.43  | 1.312  |         |         |     |
|                      | 육아               | 경험(a)  | 97          | 2.46  | 1.202  | 0.340   | .734    |     |
|                      |                  | 미경험(b) | 477         | 2.41  | 1.317  |         |         |     |

- \*p<0.05, \*\*p<0.01, \*\*\*p<0.001,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 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주요 직업분포 중 인권교육 의무대상자는 인권교육 권장 또는 의무 대상자로 분류되는 직업군인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제 판단 상관관계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별 인권감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II-6> 같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감수성 전체 척도에서 연령이 중년(40~50대)일 때와 동 거주자, 인권 관련 교육 수강 경험과 최근 5년간 기부·봉사·헌혈 경험에 대해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노년(60대 이상)일 때는 부적상관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중년(40~50대), 동 거주자, 인권 관련 교육 수강 경험, 최근 5년간 기부·봉사·헌혈 경험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각 에피소드 별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제 판단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고 싶다면, IV. 첨부2(p24)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6> 각 변인 간 상관관계

| 특성 \ 척도            | 인권감수성 (전체) | 상황지각능력   | 결과지각능력   | 책임지각능력   |
|--------------------|------------|----------|----------|----------|
| 성별(여성)             | -0.055     | -0.038   | -0.027   | -0.091*  |
| 연령(청년)             | 0.003      | 0.042    | -0.037   | 0.002    |
| 연령(중년)             | 0.184**    | 0.141**  | 0.186**  | 0.183**  |
| 연령(노년)             | -0.233**   | -0.229** | -0.186** | -0.231** |
| 거주지(동)             | 0.104*     | 0.080    | 0.088*   | 0.123**  |
| 장애여부(有)            | 0.006      | 0.009    | 0.022    | -0.015   |
| 인권관련<br>교육수강 경험(有) | 0.188**    | 0.177**  | 0.199**  | 0.140**  |
| 기부·봉사·헌혈<br>경험(有)  | 0.177**    | 0.184**  | 0.140**  | 0.165**  |
| 직업(공공영역)           | -0.008     | 0.002    | 0.016    | -0.043   |

- \*p<0.05, \*\*p<0.01, \*\*\*p<0.001,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 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직업(공공영역)은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V. 결론

###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천안시민의 인권감수성을 파악하고,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천안시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민이거나 근무지나 학교 등 생활반경이 주로 천안인 자를 포함하여 5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개인적 특성으로 평균연령은 45.7세이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참여하였다. 직업은 직장인 33.8%, 주부 12.4%, 자영업 8.8% 순이고, 서북구 동지역에 가장 많은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고, 53.1%가 인권 교육 수강 경험이 있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75.4%의 참여자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최근 5년 이내 경험(중복선택)에서는 기부 34.7%, 자원봉사 29.2%, 헌혈 11.8%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천안시 차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정도에 대한 생각에는 49.1%가 보통이다, 31.9%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었던 개인의 인권감수성(5점 만점)은 평균 3.22점의 결과가 나왔다. 참여자의 55.2%가 향후 인권토론회 또는 인권포럼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천안시민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2.41점으로 이는 지역별 연구가 없어 타 지역의 인권감수성 수준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집단 인권감수성과 비교했을 때 중간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수준은 2.69점(김미정, 2017),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3.21점(이은희, 2017)보다는 낮지만 북한이탈주민 1.94점(이진혁, 최정민, 2020),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 2.23점(홍기훈, 2018)보다는 높다. 인권상황 에피소드별로는 김씨의 구속(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권감수성이 가장 높으며,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은 점수가 제일 낮다.

셋째, 참여자 특성별 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분석의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읍과 면 거주자보다 동에 거주한 참여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이 높다. 인권관련 수강을 받은 참여자와 최근 5년간 기부·봉사·헌혈 경험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별 상관관계 결과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년(40~50대), 동 거주자,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 최근 5년간 기부·봉사·헌혈 경험으로 나타났다. 각 에피소드 특성 별 상관관계에 차이는 있지만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게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권감수성 상관관계를 보인다.

## 2. 제언

결과를 토대로 천안시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권교육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안시민 역시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참여자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의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현재 권장 또는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군 뿐 만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인권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 문제를 인권의 눈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인권 실천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의 정규(필수)과목으로 인권교육의 개설이 필요하고, 인권교육의 양적확대에 발맞춰 인권강사의 양성과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로서 인권강사가 천안 실정에 맞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대상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의 추가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의 질적 개선을 제안한다. 인권교육 권장 및 의무대상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은 인권교육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만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인권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며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평가다. 최근 5년 이내의 기부·봉사·헌혈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았다는 점

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기존 획일적인 인권교육의 방식을 소규모, 직급별로 나누고 형태를 사례 토론이나 체험형 활동으로 확장하는 등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활용한다. 인권 문제는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특정 계층만 겪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통찰한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라고 인지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인권감수성은 단순히 인권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가치와 태도를 정립하여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번 조사는 천안시민 일부를 임의표집 한 것으로 천안시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감수성 조사를 천안시민의 인권수준을 진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령, 직업 등 주요 특성별로 나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감수성 조사 참여자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겠다.



VI. 첨부 : 1.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지

##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안녕하세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8년 6월 창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이번 인권감수성 조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심리적 과정을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 인용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파기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은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의 지표로서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천안 시민의 인권 감수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대상 : 천안시민(근무지나 학교 등 생활반경이 주로 천안인 자 포함) 중 20세 이상 성인 500명
- 설문기간 : 2021. 6. 23(수) ~ 7. 16(금)까지
- 소요시간 : 10여분
- 문의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선영(T. 041-575-2811)

\* 설문을 완료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교환권(후라이드치킨)**을 전송해 드리  
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

동의 >>>휴대폰 번호 \_\_\_\_\_

비동의

■ 개인 인적 사항

1. 당신의 법적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을 적어주세요. : ▶만\_\_\_\_\_세

3. 당신의 직업을 적어주세요.(예: 학생, 공무원, 자영업, 주부, 무직 등)

▶\_\_\_\_\_

4.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동남구 읍면지역   ② 동남구 동지역   ③ 서북구 읍면지역   ④ 서북구 동지역  
⑤ 기타(근무지나 학교 등 생활반경이 주로 천안인 경우)

5. 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 ① 등록장애인이다   ② 장애는 있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다   ③ 없다

6. 당신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표기해주세요.

1점은 매우 낮다, 5점은 매우 높다는 나타냅니다. ▶(            )점

7. 인권교육(강의, 워크숍, 세미나, 학회 등)을 수강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인권교육이란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과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을 말합니다. 인권리더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차별금지과 혐오표현 등이 포함됩니다.

8.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들어본 적 있다.      ② 들어본 적 없다.

9. 최근 5년 이내 경험한 것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 자원봉사     헌혈       기부       출산       육아       없다

10. 천안시 차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인권증진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인권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인권감수성이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표기해주세요.

1점은 매우 낮다, 5점은 매우 높다는 나타냅니다. ▶( )점

12. 향후 인권감수성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인권토론회 또는 인권포럼 등의 행사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예 ② 아니요

## ■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

다음은 여러분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제시되는데 여러분은 각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총 5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문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회문제 상황에 대한 박스 안의 사례를 천천히 읽습니다.

두 번째, 각 사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응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응답은 바로 떠오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회의**

정OO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65세로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줄곧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왔다. 아들 내외는 효자로 소문날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여생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할아버지로부터 얼마 전에 청혼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재혼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자식들은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할머니는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            |         |         |            |
| 2.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               |            |         |         |            |

**II. 할머니가 재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               |            |         |         |            |
| 2. 할머니가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것이다.  |               |            |         |         |            |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1. 가족들의 결정사항에 따르시도록 한다. |              |           |         |        |           |
| 2.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   |              |           |         |        |           |

## [2] 김씨의 구속

밤늦게 귀가하던 한 남자가 괴한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얼굴에 복면을 한데다가 뚜렷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한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범인으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신고를 못했는데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와 체격과 용모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며, 따라서 구속되었던 김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일단 목격자의 말을 믿고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여 구속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               |            |         |         |            |
| 2.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         |         |            |

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범인일지도 모르는 김씨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다.     |               |            |         |         |            |
| 2. 확실한 증거 없이 체포, 구속함으로써 김씨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 |               |            |         |         |            |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1.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치기 전에 일단 체포하여 구속한다. |              |           |         |        |           |
| 2. 좀 더 정황을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한다.    |              |           |         |        |           |

**[3] 감원대상**

정숙씨는 S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 전 OO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제품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사내에서 만난 동료직원과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정숙씨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5~600명의 사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상사는 정숙씨를 자리로 부른 후 현재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남자사원보다는 정숙씨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직을 권한다. 상사와의 면담 후 자리로 돌아온 정숙씨는 고민에 빠진다.

I. 위의 감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남성이 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               |            |         |         |            |
| 2.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               |            |         |         |            |

II. 다음은 위와 같은 감원이 실시될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남성이 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경제의 충격이 덜 심할 것이다.          |               |            |         |         |            |
| 2.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 직원이 일할 권리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               |            |         |         |            |

III. 다음은 고민에 빠진 정숙씨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정숙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1. 회사 경영난 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              |           |         |        |           |
| 2.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원칙에 항의한다.         |              |           |         |        |           |

#### [4] 국가 의료정보 센터 설립

다음 소식은 국가 의료정보 센터 설립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20XX년 까지 국가의료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전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처방, 투약 기록을 의료정보 센터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방문하였을 때 더욱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수집된 의료정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에 활용되어 국민건강 증대와 수명연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I. 위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정부는 국민건강 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            |         |         |            |
| 2. 의료정보 유출로 야기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               |            |         |         |            |

II. 다음은 의료정보 센터의 설립 후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검사나 진료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한 진단을 도울 수 있다.               |               |            |         |         |            |
| 2. 알리고 싶지 않는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 |               |            |         |         |            |

III. 당신은 국가 의료정보 센터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1. 국민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적극 지지한다.   |              |           |         |        |           |
| 2.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대한다. |              |           |         |        |           |



**[5] 의사의 고민**

신OO씨는 희귀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동안 신씨를 담당해 왔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신씨가 임신할 경우 유전병이 태아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동일한 병을 가진 장애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신씨는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부족하여, 신씨의 부모는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신씨의 부모는 차라리 딸에게 불임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수술 부탁을 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동일한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               |            |         |         |            |
| 2. 신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의 일부를 수술해서는 안 된다. |               |            |         |         |            |

**II. 의사가 불임수술을 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
|--|---------------|------------|---------|---------|------------|
| 1.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            |         |         |            |
| 2. 자녀를 낳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               |            |         |         |            |

**III.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1. 자녀의 불행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을 시켜준다.               |              |           |         |        |           |
|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을 부모에게 주지시킨다. |              |           |         |        |           |

## VI. 첨부 : 2. 에피소드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제 판단

### 1)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참여자의 개인 특성별 사회문제 판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VI-1~5>같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중 가족회의(노인의 행복추구권, 표 VI-1)을 살펴보면, 여성 집단에서 질문 3)의 “가족들의 결정사항에 따르시도록 한다” 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 < 0.01$ ) 즉, 여성 집단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성향이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특성별 사회문제 판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집단은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자’ 와 ‘최근 5년 이내 기부·봉사·헌혈 경험자’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할머니를 우선시 하는 판단성향이 확인되었다. 단, 모든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2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였다.

<표 VI-1> 사회문제 판단과 참여자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논제 1)

| 특성               | 주장 |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
|                  |    | 할머니는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 할머니가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것이다. | 가족들의 결정사항에 따르시도록 한다. |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 |
| 성별(여성)           |    | 0.060                  | -0.078              | 0.105*                  | 0.049                  | 0.109**              | -0.076             |
| 연령(청년)           |    | 0.062                  | 0.004               | 0.125**                 | 0.099*                 | 0.043                | 0.011              |
| 연령(중년)           |    | -0.060                 | 0.109**             | -0.022                  | 0.061                  | -0.172**             | 0.107*             |
| 연령(노년)           |    | -0.001                 | -0.141**            | -0.127**                | -0.199**               | 0.162**              | -0.148**           |
| 거주지(동)           |    | 0.044                  | 0.033               | 0.090*                  | 0.072                  | -0.029               | -0.020             |
| 장애여부(有)          |    | -0.074                 | -0.054              | -0.018                  | -0.015                 | 0.036                | -0.088*            |
|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有) |    | -0.115**               | 0.105*              | -0.063                  | 0.151**                | -0.154**             | 0.096*             |
| 기부·봉사·헌혈 경험(有)   |    | -0.067                 | .167**              | -0.112**                | 0.109**                | -0.184**             | 0.107*             |
| 직업(공공영역)         |    | 0.011                  | 0.031               | -0.016                  | 0.087                  | -0.029               | -0.022             |

- \* $p < 0.05$ , \*\* $p < 0.01$ , \*\*\* $p < 0.001$ ,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 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직업(공공영역)은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2) 김씨의 구속(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두 번째 논제의 참여자 특성별 사회문제 판단 결과로는 ‘성별’ 과 ‘연령’, ‘인권관련 교육 수강자’, ‘최근 5년 이내 기부·봉사·헌혈 경험자’ 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청년층 집단에서는 체포를 우선시 하는 판단이, 중년층과 인권관련 교육 수강자 집단, 기부·봉사·헌혈 경험자 집단에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성향이 확인되었다. 논제 2에서도 모든 Pearson 상관관계의 절댓값이 0.2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VI-2> 사회문제 판단과 참여자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논제 2)

| 특성               | 주장 |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
|                  |    | 일단 목격자의 말을 믿고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여 구속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범인일지도 모르는 김씨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다. | 확실한 증거 없이 체포, 구속함으로써 김씨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 |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치지 전에 일단 체포하여 구속한다. | 좀 더 정확을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한다. |
| 성별(여성)           |    | 0.106*  | -0.048                                 | 0.172**                            | -0.025                                 | 0.127**                            | -0.043                          |
| 연령(청년)           |    | 0.121**                                       | -0.093*                                | 0.119**                            | -0.067                                 | 0.172**                            | -0.128**                        |
| 연령(중년)           |    | -0.147**                                      | 0.128**                                | -0.128**                           | 0.141**                                | -0.150**                           | 0.174**                         |
| 연령(노년)           |    | 0.034   | -0.045                                 | 0.012                              | -0.093*                                | -0.026                             | -0.058                          |
| 거주지(동)           |    | 0.023   | 0.054                                  | 0.011                              | 0.044                                  | -0.035                             | 0.030                           |
| 장애여부(有)          |    | -0.058  | 0.031                                  | -0.057                             | 0.012                                  | -0.060                             | 0.039                           |
|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有) |    | -0.050  | 0.061                                  | -0.116**                           | 0.048                                  | -0.070                             | 0.053                           |
| 기부·봉사·헌혈 경험(有)   |    | -0.112**                                      | 0.137**                                | -0.140**                           | 0.064                                  | -0.134**                           | .076                            |
| 직업(공공영역)         |    | -0.001  | 0.046                                  | -0.033                             | 0.037                                  | -0.027                             | -0.008                          |

- \*p<0.05, \*\*p<0.01, \*\*\*p<0.001,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 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직업(공공영역)은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3) 감원대상(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세 번째 논제에서는 집단 특성별 판단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이 드러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 가장의 실직이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판단성향이 나타났다. 인권교육 수강 경험자와 기부·봉사·헌혈 경험자에는 그 반대의 판단 성향이 확인되었고,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에 찬성하는 성향이 높게 확인되었다. 논제 3에서도 모든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2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VI-3> 사회문제 판단과 참여자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논제 3)

| 특성               | 주장 |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
|                  |    | 남성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 남성 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경제의 충격이 덜 심할 것이다. |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직원이 일할 권리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 회사 경영난 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원칙에 항의한다. |
| 성별(여성)           |    | 0.054                            | 0.113**                             | 0.096*                             | 0.093*                                      | 0.085*                                   | -0.023                           |
| 연령(청년)           |    | -0.139**                         | 0.042                               | -0.096*                            | 0.011                                       | 0.010                                    | 0.045                            |
| 연령(중년)           |    | 0.034                            | 0.150**                             | -0.020                             | 0.137**                                     | -0.078                                   | 0.116**                          |
| 연령(노년)           |    | 0.130**                          | -0.240**                            | 0.144**                            | -0.185**                                    | 0.085*                                   | -0.201**                         |
| 거주지(동)           |    | 0.005                            | 0.107*                              | 0.029                              | 0.078                                       | -0.085                                   | 0.089*                           |
| 장애여부(有)          |    | -0.053                           | -0.011                              | -0.055                             | 0.012                                       | -0.074                                   | 0.028                            |
|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有) |    | -0.112**                         | 0.069                               | -0.143**                           | 0.106*                                      | -0.075                                   | 0.070                            |
| 기부·봉사·헌혈 경험(有)   |    | -0.105*                          | 0.099*                              | -0.121**                           | 0.051                                       | -0.108**                                 | 0.105*                           |
| 직업(공공영역)         |    | 0.044                            | -0.037                              | 0.038                              | -0.042                                      | 0.034                                    | -0.048                           |

- \*p<0.05, \*\*p<0.01, \*\*\*p<0.001,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 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직업(공공영역)은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4) 국가 의료정보센터 설립(사생활권)

네 번째 논제의 참여자 개인적 특성별 사회문제 판단 결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천안시 동지역 거주자’, ‘장애여부(有)’, ‘인권관련 교육 수강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년층과 동지역 거주자, 장애여부(有), 인권관련 교육 수강자의 경우에는 의료정보 보호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그와 상반되는 집단으로는 노년층의 경우엔 의료 정보 수집을 우선하는 성향이 확인되었다. 논제 4에서도 모든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2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VI-4> 사회문제 판단과 참여자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논제 4)

| 특성               | 주장 |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
|                  |    | 정부는 국민건강 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의료정보 유출로 야기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 검사나 진료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한 진단을 도울 수 있다. | 알리고 싶지 않는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 | 국민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적극 지지한다. |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대한다. |
| 성별(여성)           |    | 0.042                                  | 0.019                           | 0.042                                | -0.013   | 0.041                          | 0.021                            |
| 연령(청년)           |    | 0.008                                  | 0.020                           | 0.038                                | 0.033  | -0.027                         | 0.064                            |
| 연령(중년)           |    | -0.060                                 | 0.086*                          | -0.060                               | 0.100*   | -0.075                         | 0.043                            |
| 연령(노년)           |    | 0.066                                  | -0.133**                        | 0.027                                | -0.165**   | 0.128**                        | -0.133**                         |
| 거주지(동)           |    | 0.016                                  | 0.145**                         | -0.014                               | 0.072  | -0.042                         | -0.003                           |
| 장애여부(有)          |    | -0.119**                               | -0.021                          | -0.137**                             | 0.025  | -0.071                         | 0.022                            |
|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有) |    | -0.070                                 | 0.058                           | -0.079                               | 0.046  | -0.065                         | 0.102*                           |
| 기부·봉사·헌혈 경험(有)   |    | -0.043                                 | 0.073                           | -0.045                               | 0.056  | -0.051                         | 0.067                            |
| 직업(공공영역)         |    | -0.041                                 | -0.005                          | -0.004                               | 0.013  | 0.015                          | 0.022                            |

- \*p<0.05, \*\*p<0.01, \*\*\*p<0.001,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 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직업(공공영역)은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5) 의사의 고민(장애인 신체의 자유권)

마지막 논제에서도 특성별 판단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이 드러났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불임수술에 찬성하는 판단성향이 나타났으며, ‘여성’ 과 ‘인권관련 교육 수강자’, ‘천안시 동 지역 거주자’, ‘최근 5년간 기부·봉사·헌혈 경험자’의 경우에는 불임수술에 반대한다는 판단성향이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모든 질문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다. 마지막 논제에서도 모든 Pearson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2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VI-5> 사회문제 판단과 참여자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논제 5)

| 특성               | 주장 |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
|                  |    | 동일한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 신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의 일부를 수술해서는 안 된다. |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자녀를 낳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 자녀의 불행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을 시켜준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을 부모에게 주지시킨다. |
| 성별(여성)           |    | 0.098*                            | -0.072                               | 0.124**                             | -0.047              | 0.086*                    | -0.077                                  |
| 연령(청년)           |    | -0.166**                          | 0.129**                              | -0.095*                             | 0.020               | -0.134**                  | 0.014                                   |
| 연령(중년)           |    | 0.006                             | 0.051                                | -0.042                              | 0.140**             | -0.033                    | 0.132**                                 |
| 연령(노년)           |    | 0.198**                           | -0.225**                             | 0.171**                             | -0.201**            | 0.207**                   | -0.182**                                |
| 거주지(동)           |    | -0.112*                           | 0.096*                               | -0.101*                             | 0.097*              | -0.117**                  | 0.083                                   |
| 장애여부(有)          |    | -0.010                            | -0.051                               | -0.020                              | -0.044              | -0.015                    | -0.040                                  |
|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有) |    | -0.183**                          | 0.110**                              | -0.186**                            | 0.122**             | -0.160**                  | 0.100*                                  |
| 기부·봉사·헌혈 경험(有)   |    | -0.155**                          | 0.094*                               | -0.184**                            | 0.104*              | -0.144**                  | 0.146**                                 |
| 직업(공공영역)         |    | 0.043                             | -0.041                               | 0.035                               | -0.023              | -0.040                    | -0.010                                  |

- \*p<0.05, \*\*p<0.01, \*\*\*p<0.001, 집단 변수들의 부호화는 ‘해당=1, 비해당=0’으로 분석
- 연령구분 : 청년(20, 30대), 중년(40, 50대), 노년(60대 이상)
- 직업(공공영역)은 인권교육 대상자로 권장 또는 의무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포함

## VI. 첨부 : 3.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 김미정, 2017,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충희, 2004,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정선, 2007,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 인식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숙, 20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직무만족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 2017,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진혁, 최정민, 2020,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14집 3호.
- 장바론,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훈, 2018,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제8권 제3호.